

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조합(결합) 인증대상 여부

RRA KSDB 제17호 (2021.11.22.)

□ 개 요

- 적합성평가(이하 'KC전파인증'이라 한다)를 받은 스피커, 모니터, 전동 의자 등을 조합하여 판매할 경우 KC전파인증 대상 여부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고자 함

□ 근 거

- 「전파법」 제58조의2(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)
- 「전파법 시행령」 제77조의2(적합인증), 제77조의3(적합등록)
- 「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」 제3조(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분류 등)

□ 내 용

- 방송통신기자재등*을 제조·수입·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KC전파인증(인증)을 받아야 하며 **인증을 완료한 기자재들을 단순 조합한 완제품은 더 이상의 인증 없이 유통·판매 가능**
*방송통신기자재등: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
- 다만, PCB기판 등의 전자회로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**KC전파인증을 받아야 함**

<KC전파인증 받은 제품의 단순조합 예시(VR 시뮬레이터)>

